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71호
2018. 9. 21.(금)

차 례

고 시(4)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고시(고시 제2018-135호)1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고시(고시 제2018-136호)8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37호)15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승인 고시(고시 제2018-138호)16

공 고(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17호)21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719호)2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720호)2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722호)2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31호)38
- 중리행복길 일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18-732호)39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18호)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33호)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34호)6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35호)79

공									
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2018. 9. 1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 ③ 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서로 요청하고, 공동회장단이 가입·탈퇴여부를 결정한다.(2017. 9. 7. 신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 ② 공동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③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2017. 9. 7. 신설)
 - 1. 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그밖에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동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 ① 공동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공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동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존망 받는 인사로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사람
3.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의회 의원(2016. 3. 29. 개정)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주관하고, 회의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해산) 협의회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유사 협의회 혹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2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 자문위원 : 4개 광역자치단체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경 기 도	도 지 사	이 재 명
광주광역시	시 장	이 용 섭	강 원 도	도 지 사	최 문 순

○ 회 원 : 51개 기초자치단체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1	경기도 (9)	광 명 시	박 승 원	27	서울특별시 (19)	강 동 구	이 정 훈
2		군 포 시	한 대 희	28		강 북 구	박 겸 수
3		김 포 시	정 하 영	29		강 서 구	노 현 송
4		부 천 시	장 덕 천	30		관 약 구	박 준 희
5		수 원 시	염 태 영	31		광 진 구	김 선 갑
6		시 흥 시	임 병 택	32		구 로 구	이 성
7		안 산 시	윤 화 섭	33		금 천 구	유 성 훈
8		안 성 시	우 석 제	34		노 원 구	오 승 록
9		오 산 시	곽 상 욱	35		도 봉 구	이 동 진
10	경상남도 (4)	거 창 군	구 인 모	36		동 대 문 구	유 덕 열
11		사 천 시	송 도 근	37		동 작 구	이 창 우
12		함 안 군	조 근 제	38		마 포 구	유 동 균
13	광주광역시 (4)	합 천 군	문 준 희	39		서 대 문 구	문 석 진
14		광 산 구	김 삼 호	40		성 동 구	정 원 오
15		남 구	김 병 내	41		성 북 구	이 승 로
16		서 구	서 대 석	42		양 천 구	김 수 영
17	북 구	문 인	43	영 등 포 구		채 현 일	
18	인천광역시 (2)	미 추 흥 구	김 정 식	44		은 평 구	김 미 경
19		부 평 구	차 준 택	45		종 로 구	김 영 종
20	전라남도 (2)	담 양 군	최 형 식	46	충청남도 (3)	논 산 시	황 명 선
21		해 남 군	명 현 관	47		아 산 시	오 세 현
22	전라북도 (5)	무 주 군	황 인 흥	48		천 안 시	구 본 영
23		완 주 군	박 성 일	49	강원도 (3)	강 릉 시	김 한 근
24		전 주 시	김 승 수	50		정 선 군	최 승 준
25		정 읍 시	유 진 섭	51		평 창 군	한 왕 기
26		진 안 군	이 향 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고시

2018. 9. 1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

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16
인 천	남구	1
광 주	서구	1
경 기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6
충 북	제천시, 보은군	2
충 남	논산시, 당진시	2
전 북	익산시	1
전 남	여수시, 곡성군	2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103-4	한밭대로988번길 100	2018. 9. 21.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9,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175-42	한남로38번길 21	2018. 9. 21.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17-3	오정로9번길 55	2018. 9. 21.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동 289-3	대화로 173	2018. 9. 21.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대화동)을 반영	
문평동 48-33	문평서로18번길 71	2018. 9. 21.	건물신축	문평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승인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결산개황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윤성환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3명의 위원에게 2018. 4. 11일부터 4. 30일까지 20일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에 승인 신청하여 2018. 9. 20.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387,051,546,900	377,848,425,900	9,203,121,000
결산액	세입	393,418,119,218	384,145,439,544	9,272,679,674
	세출	334,032,787,403	329,372,884,618	4,659,902,785
잉여금내역	계	59,385,331,815	54,772,554,926	4,612,776,889
	명시이월	15,531,976,630	12,548,358,230	2,983,618,400
	사고이월	3,861,942,470	3,780,942,470	81,000,000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사용잔액	4,711,861,609	4,637,511,639	74,349,970
	순세계잉여금	35,279,551,106	33,805,742,587	1,473,808,519

3. 일반회계결산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377,848,425,900	390,925,019,150	384,145,439,544	922,024,964	5,857,554,642
지방세수입	40,670,000,000	43,415,020,090	42,559,396,640	34,947,170	820,676,280
세외수입	15,005,939,000	22,081,072,684	16,157,116,528	887,077,794	5,036,878,362
지방교부세	8,706,000,000	10,017,790,070	10,017,790,07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58,744,314,000	61,101,429,000	61,101,429,000		
보조금	197,577,463,000	197,164,981,940	197,164,981,94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7,144,709,900	57,144,725,366	57,144,725,366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377,848,425,900	329,372,884,618	16,329,300,700	32,146,240,582
일반공공행정	17,118,429,680	15,007,294,231	1,100,000,000	1,011,135,449
공공질서및안전	1,105,480,000	826,347,230	200,000,000	79,132,770
교육	5,483,578,000	5,201,216,142		282,361,858
문화및관광	5,842,295,980	4,925,778,737	629,271,380	287,245,863
환경보호	12,146,758,000	11,534,619,550	263,559,580	348,578,870
사회복지	177,472,745,800	173,450,789,722	21,644,000	4,000,312,078
보건	8,990,280,600	7,355,468,090	960,284,000	674,528,510
농림해양수산	6,097,423,130	5,631,162,220	145,468,900	320,792,010
산업·중소기업	2,469,930,000	1,019,475,320	1,400,000,000	50,454,680
수송및교통	29,123,843,720	25,952,367,401	2,620,332,820	551,143,499
국토및지역개발	32,751,358,990	22,347,430,180	8,988,740,020	1,415,188,790
예비비	21,096,874,000			21,096,874,000
기타	58,149,428,000	56,120,935,795		2,028,492,20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4. 특별회계 결산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계	9,153,121,000	12,638,447,613	9,272,679,674	449,319,069	2,916,448,87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 회 계	629,488,000	1,128,503,650	669,990,359		458,513,291
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	982,723,000	1,028,449,380	1,028,449,380		
지 하 수 관 리 특별 회 계	975,234,000	1,020,619,630	975,432,450		45,187,180
주 차 장 특별 회 계	6,565,676,000	9,460,874,953	6,598,807,485	449,319,069	2,412,748,399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9,203,121,000	4,659,902,785	3,064,618,400	1,478,599,815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 회 계	629,488,000	584,997,070		44,490,930
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	1,032,723,000	867,979,250	81,000,000	83,743,750
지 하 수 관 리 특별 회 계	975,234,000	38,995,285		936,238,715
주 차 장 특별 회 계	6,565,676,000	3,167,931,180	2,983,618,400	414,126,420

5. 기금현황

(단위 : 원)

기 금 명	설치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⑤=③-④
		전년도말①	당해연도②	계 ③=①+②		
계		18,681,713,127	5,845,050,230	24,526,763,357	2,753,424,050	21,773,339,307
통합관리기금	2006	11,764,788,207 (145,923,500)	2,863,817,123 (198,049,390)	14,628,605,330 (343,972,890)	188,988,077 (145,923,500)	14,439,617,253 (198,049,39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991	174,456,638	2,775,510	177,232,148	4,200,000	173,032,148
자활기금	2007	2,473,562,462	93,489,483	2,567,051,945	40,000,000	2,527,051,945
노인복지기금	1996	653,717,504	10,393,250	664,110,754	17,114,000	646,996,754
여성복지기금	1996	673,922,784	10,673,703	684,596,487	19,996,600	664,599,887
녹지기금	1993	1,637,371,515	27,168,530	1,664,540,045		1,664,540,045
재난관리기금	1998	2,407,201,610	477,852,300	2,885,053,910	73,756,850	2,811,297,060
식품진흥기금	2001	449,241,865	38,620,754	487,862,619	31,118,140	456,744,479
주차장 조성기금	2005	4,490,949,719	2,433,293,960	6,924,243,679	2,421,314,960	4,502,928,719
환경보전기금	2008	546,581,730	4,403,560	550,985,290		550,985,290
청사건립기금	2013	5,028,783,800	2,548,329,790	7,577,113,590		7,577,113,590

※ “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6. 채권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2,928,116,500	142,224,700	2,719,012,960	-	-	-	209,103,540	142,224,700
융 자 금 채 권	소 계	2,928,116,500	142,224,700	2,719,012,960	-	-	209,103,540	142,224,700
	공무원학자대여금	2,719,012,960	-	2,719,012,960	-	-	-	-
	기타융자금	209,103,540	142,224,700	-	-	-	-	209,103,540

7. 채무결산

가) 채무현황

(단위 : 원)

회계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A-B)	발 생 액 (A)	소 멸 액(B)		
일 반 회 계	계	2,350,000,000	△2,350,000,000	-	2,350,000,000	-	-
	차 입 금	2,350,000,000	△2,350,000,000	-	2,350,000,000	-	-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 원)

과 목				승 인 일 자	계 약 일 자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조 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조 직	부 문	세부 사업	편성 목						
		“해		당		없		음 “	

8. 주민부담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원/명)

지 방 세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액
42,559,396,640	186,902	227,710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 체납 고지” 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8. 9. 21(금) ~ 2018. 10. 8.(월)(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1명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고
이○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길 ○(대화동)	2018.09.05.	2018.09.17.	수취인불명	495,880	체납고지서 납부 공문 발송 (생계급여)

5. 송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 납부 통지 하오니 2018. 10. 2.(화)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비용의 징수)의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042-608-6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46호	통신관로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	계	SK	전선	아스팔트 보도블럭	10.0	15.0
		오정동 707번지	브로드밴 드(주)			10.0	15.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47호	도시가스관 철거	계	CNCITY	도시가스		4.0	8.0
		법동 187번지 앞	에너지		소형고압블럭	4.0	8.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범동 187번지 앞



2018. 09.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48호	도시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아스팔트 소형고압블럭	64.0	76.8
		덕암동 12-1번지 앞				2.0	2.4
		덕암동 42-7번지 앞				8.0	9.6
		목상동 209-2번지 앞				6.0	7.2
		비래동 113-36번지 앞				4.0	4.8
		비래동 121-4번지 앞				1.0	1.2
		석봉동 191-26번지 앞				6.0	7.2
		석봉동 316-45번지 앞				6.0	7.2
		오정동 68-51번지 앞				3.0	3.6
		오정동 89-11번지 앞				2.0	2.4
		중리동 241-11번지 앞				5.0	6.0
		석봉동 309-37번지 앞				21.0	25.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덕암동 12-1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덕암동 42-7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목상동 209-2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비래동 113-36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비래동 121-4번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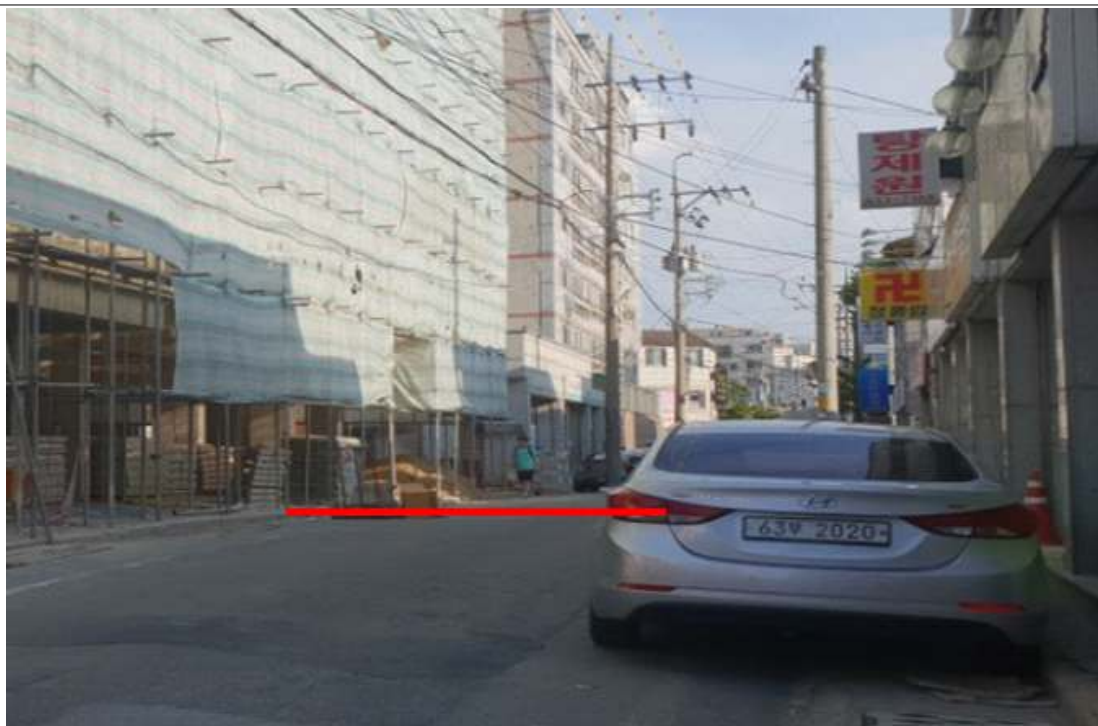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석봉동 191-26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석봉동 316-45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68-51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89-11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중리동 241-11번지 앞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석봉동 309-37번지 앞



2018. 09.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8. 9. 21. ~ 2018. 10. 6.(15일간)

◇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2. 당사자	성 명	정*희(1964. 2. 6.)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 ** 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4.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71번지 1**동 13**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196,920원(금일십구만육천구백이십원)				
6. 법 적 근 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및 제11조(과태료)				
7. 기 타 문 의	문 의 처	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서명	민원지적과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042-608-5324)		
		FAX	042-608-3825		

중리행복길 일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m ²)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중리행복길 제1공영주차장	중리동 196-10	4	803	34면	전일운영 (00:00 ~ 24:00)	21,6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리행복길 제2공영주차장	중리동 197-17	4	391	15면		
중리만남 공영주차장	중리동 180-1	4	512	18면		
중리구봉 공영주차장	중리동 164-5	4	850	30면		
※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2년 (2018. 10. 18. ~ 2020. 10. 17.)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8. 9. 21. 10:00 ~ 2018. 10. 1. 16:00	2018. 10. 2.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로는 “외환위탁 또는 신한위탁계정”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계약 후 위탁사용 개시 전 제출
- 제출기한 : 2018. 10. 12.(금)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18년 10월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1.81%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 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과다 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비함(안 제3조).

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을 정비함(안 제7조).

- 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함(안 제9조).
- 라. 긴급구조통제단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을 지원함(안 제15조).
- 마. 통신망 두절 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0조).
- 바.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0.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전화 : 042-608-5344, FAX : 042-608-3849, E-mail : ljh131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정해 (전화 : 042-608-53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

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

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 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 ③ 재난이 오지마을 등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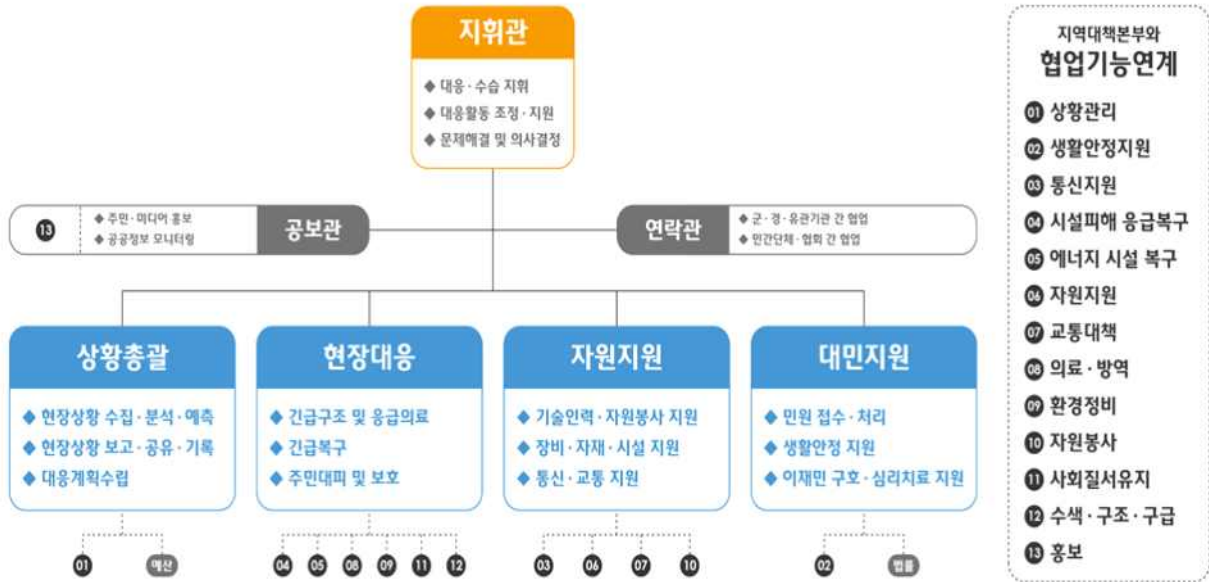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용어 정비 등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 법률로 수정함
(안 제5조).

나.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전화 : 042-608-5444, FAX : 042-608-3851,

E-mail : kjs8306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담당자 김정숙(전화 : 042-608-5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 중 “구축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u></p>	<p><u>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u>관한</u> <u>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필요</u> <u>한</u> ----- ----- ----- -----.</p>
<p>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u>정신보건센터</u>에 들 수 있다.</p>	<p>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u>정신건강복지센터</u>--.</p>
<p>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p>	<p>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 ----- 구축하여야 한다.</p>
<p>제8조(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선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선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 건 소	
담 당 자	김 정 숙
연 락 처	(042) 608 - 544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전화 : 042-608-5444, FAX : 042-608-3851,
E-mail : kjs8306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담당자 김정숙(전화 : 042-608-5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등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7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3. 비용추계 전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계속사업)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	-	-	-	-	-
세입	소계(a)		379,600	384,600	389,600	394,600	399,600	1,948,000
	국비보조금		160,000	162,500	165,000	167,500	170,000	825,000
	시비보조금		122,300	123,550	124,800	126,050	127,300	624,000
	구비		97,300	98,550	99,800	101,050	102,300	499,000
세출	소계(b)		379,600	384,600	389,600	394,600	399,600	1,948,00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10,000	215,000	220,000	225,000	230,000	1,100,000
	자살예방사업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종사자 특별수당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2018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 210,000천원
 - ※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연차별 증액
 - 자살예방사업 : 110,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50,000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100,000원 × 8명 × 12개월 : 9,600천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282,300	286,050	289,800	293,550	297,300	1,449,000
	국비보조금		160,000	162,500	165,000	167,500	170,000	825,000
	시비보조금		122,300	123,550	124,800	126,050	127,300	624,0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97,300	98,550	99,800	101,050	102,300	499,000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협의사항 : 해당 없음
9. 작 성 자 : 보건행정과장 행정5급 고봉주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

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정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 건 소	
담 당 자	김 정 속
연 락 처	(042) 608 - 544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력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장의 직위 변경 및 인력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소관부서 협의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9. 21. ~ 2018. 10. 1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전화 : 042-608-6532, FAX : 042-608-3822, E-mail : kwonh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 담당자(전화 : 042-608-65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4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센터의 운영) ①센터에는 비상근직 소장 1명과 상근직 4명을 두되, 상근직은 팀장 1명, 자원봉사상담원 2명, 전산관리직 1명을 둔다.</p> <p>② · ③ (생략)</p>	<p>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4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행정과	
담 당 자 연 락 처	권 해 림 (042) 608 - 653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